

의안번호	제 456 호
의 결 연 월 일	2009년 12월 일 (제285회)

**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 
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발 의 자	민경환 의원 외 6인
발의연월일	2009년 12월 8일

**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 
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  
(민경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5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09. 12. 8.

발 의 자: 민경환·송은섭·박영웅·  
권광택·박종갑·심홍섭·  
이영복 ( 7인)

**1. 제안이유**

- 농수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하여 설치된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의 사업비 지원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,
-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와 조례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**2. 주요내용**

- 가. 사업비 지원 한도액의 증액(안 제7조)
- 나.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의 정비 등(안 제2조)
- 다. 현실에 맞도록 조문 정비 등(안 제1조, 안 제3조, 안 제5조, 안 제6조, 안 제10조, 안 제11조)

3. 조례안 : 불 임
4. 신 · 구조문대비표 : 불임
5. 관계법령 발취 : 불 임
6. 예산조치 : 자체 세부계획수립시 재원확보
7. 관련부서 협의 : 농정국 농업정책과
8. 입법예고 : 2009.10.30~2009.11.19(특이의견 없음)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운용관리”를 “관리·운용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농·어업”이라함은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.

제2조제2호가목의 괄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「농어촌정비법」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

제2조제2호나목 중 “100만원”을 “120만원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라목을 바목으로 하고, 본문중 “100만원”을 “120만원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라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

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·가공·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

제2조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·가공·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

제2조제3호 중 “「농업·농촌기본법」”을 “법”으로 한다.

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“법인체”라 함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말한다.

제2조제6호 중 “농업전문대학”을 “농업계 2년제대학”으로, “32세”를 “만 32세”로 한다.

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“귀농인”이라 함은 만 55세 이하의 자가 타 시·도(시·군 포함)에서 1년 이상 농업이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충청북도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8. “농수산물”이라 함은 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운용관리”를 “관리·운영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충청북도 농정심의회”를 “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5조제6호중 “심의회”를 “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6조 제목 중 “대상사업자 선정”을 “지원대상 사업자의 선정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제5조와 「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자의 선정은 시장·군수가 결정한다. 다만, 도지사가 시·군별로 지원품목과 사업비를 배정한 때에는 시장·군수는 「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제6조제3항은 이를 삭제한다.

제7조제2항제1호 중 “5천만원”을 “1억원”으로, “2억원”을 “5억원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2호 중 “3천만원으로 한다”를 “5천만원 이내로 한다”로, “5억원”을 “10억원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”를 “기금특별회계”로 한다.

제11조 제목 중 “세입.세출”을 “세입·세출”로 한다.

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특별회계 관리·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·수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한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(이하 “기금특별회계”라 한다.)를 설치하고, 기금의 조성 및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관리·운용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“농·어업”이라 함은 「농업·농촌기본법」 제3조제1호 규정에 의한 농업(축산업·임업을 포함한다) 및 「수산업법」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어업을 말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 <p>가.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(「농어촌정비법」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)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농·어업”이라 함은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 ----- (「농어촌정비법」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)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나.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<u>100만원</u> 이상인 자</p> <p>다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라.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<u>100만원</u>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</p> <p>3. “생산자단체”라 함은 「<u>농업·농촌기본법</u>」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.</p> <p>4. “법인체”라 함은 「<u>농업·농촌기본법</u>」 제1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 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.</p>	<p>나. ----- ----- <u>120만원</u> -----</p> <p>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「<u>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·가공·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</p> <p>마. 「<u>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·가공·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</p> <p>바. ----- ----- <u>120만원</u> ----- -----</p> <p>3. ----- 법 ----- ----- -----.</p> <p>4. “법인체”라 함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말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5. (생 략)</p> <p>6. “차세대농업인”이라 함은 농업 계고등학교, 농업전문대학, 대학의 농업계열학과를 졸업한 후 5년 이내인 자 또는 32세 이하인 자로서 충청북도내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</p> <p>7. “귀농인”이라 함은 타 시도 에 거주하던 50세 미만인 자 중 전 가족이1년 이상 충청북도내에 거주하고 농업을 직업으로 삶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8. “농산물”이라 함은 농업활동 에 의하여 생산되는 농작물·축산물·임산물과 사육하는 야생동물 의 고기·알 기타의 부산물을 말 한다.</p>	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-----<u>농업계 2년제대학</u>, ----- ----- ----- <u>만 32세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7. “귀농인”이라 함은 <u>만 55세 이하의 자가 타 시·도(시·군 포 함)에서 1년 이상 농업이외의 산 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충청북도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 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 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</u></p> <p>8. “<u>농수산물</u>”이라 함은 <u>법 제 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심의위원회등의 구성) ①기 금특별회계 운용관리에 관한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특별 회계 운용심의위원회(이하“심의 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</p> <p>②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 농정 심의회에서 대행한다.</p> <p>③(생 략)</p>	<p>제3조(심의위원회등의 구성) ①---- -----<u>관리·운용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----- <u>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</u>----- ---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생 략)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6. 기타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	<p>제5조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<u>심의위원회</u>----- -----</p>
<p>제6조(대상사업자 선정) ①대상사 업자 선정은 제5조 및 규칙에 의하여 시장·군수가 결정한다.</p>	<p>제6조(<u>지원대상 사업자의 선정</u>) ①<u>제5조 와 「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」 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자의 선 정은 시장·군수가 결정한다.</u> <u>다만, 도지사가 시·군별로 지원품목 과 사업비를 배정한 때에는 시장·군 수는 「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 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」 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②(생략)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시군별로 지원품목과 사업비를 배정한 때에는 시장·군수는 규칙에 의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</p> <p>제7조(생략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(생략)</p> <p>1. 시설자금은 농·어업인, 차세대농업인, 귀농인은 <u>5천만원</u> 이내로 하며, 생산자단체와 법인체는 <u>2억원</u> 이내로 한다.</p> <p>2. 운영자금은 농·어업인, 생산자단체 및 법인체는 <u>3천만원</u>으로 한다. 다만, 농·수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 매입 및 가공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<u>5억원</u> 이내로 한다.</p> <p>③(생략)</p> <p>제10조(융자금의 회수) ①(생략)</p>	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제7조(현행과 같음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-----<u>1억원</u>----- ----- ----- <u>5억원</u> -----.</p> <p>2. ----- -----<u>5천만원</u> 이 <u>내로 한다.</u> ----- ----- <u>10</u> <u>억원</u> -----.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융자금의 회수) ①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②시장·군수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용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.</p> <p>제11조(세입·세출) ①~②(생략)</p> <p>③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.</p>	<p>②----- ----- -----기금특별회계----- -----.</p> <p>제11조(세입·세출) ①~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특별회계 관리·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[시행 2009.11.28]

제3조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농어업"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.

가. 농업: 농작물재배업, 축산업,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나. 어업: 수산동식물을 포획(捕獲)·채취(採取)하거나 양식하는 산업,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

2. "농어업인"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.

가. 농업인: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

나. 어업인: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·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

3. "농어업경영체"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.

4. "생산자단체"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.

5. "농어촌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

가. 읍·면의 지역

나.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, 농어업 관련 산업,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

6. "농수산물"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농산물: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나. 수산물: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제28조 (농어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의 출하·유통·가공·판매·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어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(營農組合法人) 및 영어조합법인(營漁組合法人)과 농업회사법인(農業會社法人) 및 어업회사법인(漁業會社法人)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□ 농어촌정비법[시행 2009.12.10]

제98조 (토지와 시설의 분양) 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14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.

②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「농지법」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, 임대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③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 아닌 자가 제2항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.

□ **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**

제16조(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)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·유통·가공·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(이하 “농업생산자단체”라 한다)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(영농조합법인)을 설립할 수 있다.

제19조(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)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·가공·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(농업회사법인)을 설립할 수 있다.